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8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0일

발 의 자: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최근 비대면 마약거래가 지능적으로 발전하면서 SNS 사용이 활발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 수가 2021년 450명으로 4배 넘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한 예방책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조의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